

의안번호	2205166
의 퇴 인	김한규의원
회 답 일	2025. 1. 7.
추계번호	24D47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설치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함 ¹⁾ → 제주특별자치도에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 ²⁾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시 및 서귀포시 설치(안 제2조)

-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³⁾에

1)

시 명칭	관할구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구좌읍, 조천읍, 한림읍, 애월읍, 우도면, 한경면, 추자면,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1동, 화북2동, 삼양1동, 삼양2동, 삼양3동, 도련1동, 도련2동, 봉개동, 아라1동, 아라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용담3동, 오라1동, 오라2동, 오라3동, 연동, 노형동, 외도1동, 외도2동, 내도동 이호1동, 이호2동, 도두1동, 도두2동, 회천동, 용강동, 오등동, 영평동, 월평동, 도평동, 해안동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동홍동, 호근동, 서홍동, 중문동, 서귀동, 법환동, 상효동, 하효동, 신희동, 보목동, 토평동, 서홍동, 회수동, 대포동, 월평동, 강정동, 도순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영남동

- 2)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도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행정시에는 행정시장을 두며,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함

-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폐지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제주특별자치도에도 지방자치단체인 제주시 및 서귀포시를 두려는 것임.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수가 줄어들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의 수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의원 정수의 증감에 따른 의정비 및 정책연구위원의 인건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라 제주시 및 서귀포시가 설치될 경우의 증감될 도의회의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의 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조례의 개정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45명이며,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21명임

- 또한 시장 선출에 필요한 투표비용, 명칭 변경에 수반되는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 등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현시점에서 시장 선출비용, 표지판 등의 명칭 변경 비용 등 다양한 유형의 행정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3)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③ (생략)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생략)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시 또는 군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5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 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